

제1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2. 23(화), 14:00~18:1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 : 총 13명 중 9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조중열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오동석 평의원, 박철균 평의원, 임재수 평의원, 임원형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이상 9명)
- 불참 평의원 : 김용호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이상 4명)

4. 회의안건

- 논의사항
 - 이수훈 총장 승진 관련 논문실적 논의
 - 이수훈 총장 논문중복 게재 등 연구팀 자체조사 결과 논의
 - 이수훈 총장 박사학위 배출 학생에 대한 논문심사 결과 논의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간사님 성원보고 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총 위원 13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무 :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2월 초 이사회에서 있었던 이수훈 차기 총장 내정 결과를 듣고, 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처장께 차기 총장 내정자의 학문윤리와 승진 의혹 및 지도학생 박사학위의 표절 등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하고 두 번째로 심의사항 학칙개정(안)으로 지난 18차 회의 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아서 보류한 것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훈 차기총장 내정자의 부적절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서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회의 연구진실성 관련 보고 내용과 논문자료 10개가 첨부되어 있고, 이수훈 차기 내정자

< 간서명 란 >

의장 |||

가 지도하고 아주대학교가 박사학위를 수여한 문제의 두 논문이 들어있습니다. 교수회 총무이신 이재호 위원께서 잠깐 요약보고를 해주시면 이해하기에 편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처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순서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유인물을 보시는 대로 아주대학교 교수회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과를 잠시 보시면 2월 1일에 이수훈 교수가 차기총장으로 선임되셨고, 2월 2일에 한 교수가 이수훈 교수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증거물과 함께 교수회에 보고되었으며 차기총장 내정자였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조사위원회는 총 5명의 교내 교수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대 2명, 자연대 2명, 정보통신대 1명의 교수로 구성되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이수훈 내정자와 같은 기계공학 전공자로 하였으며, 혹시 모를 공정성 시비를 대비해서 현 교수회 대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내용은 이수훈 교수가 교신저자인 학술논문과 이수훈 교수가 지도한 학생 학위논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그런 점들이 제약점이 되겠습니다. 발간된 논문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의 실체를 전부 드러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역으로 당사자의 소명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석명이 가능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교수회에서는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추인하였고,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교수회 의장, 총동문회장, 내정자 본인, 재단 상임이사, 총장 등이 서로서로를 만나고 말씀들이 오가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현재 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조사위원회 보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수훈 교수가 지도한 학위논문의 연구진실성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수훈 교수가 발간한 발간 논문의 연구진실성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학위논문의 경우에 자료 보시면 김 모 학생과 문 모 학생이 각각 2003년과 200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중에 실험데이터의 결과, 그에 관한 해석, 그리고 참고문헌까지 대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 모 학생 학위논문의 50쪽에서 83쪽까지 내용과 문 모 학생 학위 논문의 80쪽에서 119쪽까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실험결과 그림은 똑같습니다. 김 모 학생 학위논문 그림 45개와 문 모 학생 학위논문 그림 70개 중에서

< 간서명란 >

의장

30개가 동일한데요, 그것도 앞의 introduction 부분이 아니고 뒤의 실험데이터 부분만을 놓고 봤을 때 김 모 학생 38개와 문 모 학생 50개 중에 25개 데이터가 동일합니다. 표에서도 역시 그런 것이 발견되고 참고문헌에 있어서도 김 모 학생 학위 논문 78개 참고문헌 중에 1번~75번이 문 모 학생 학위논문 참고문헌 1번~75번과 동일합니다. 중복성이 너무 과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김 모 학생의 학위 논문에만 나오는 데이터가 논문2에 수록되어 있는데, 논문2는 문 모 학생이 주저자로 되어있고 김 모 학생은 저자평단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학위논문과 발간된 학술논문 사이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일치가 발견되어 지금 드러나는 것 이상의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학위논문에 있어서 심한 중복은 해당 학생에게는 학위박탈의 사유가 되겠고요. 이것을 지도한 지도교수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발간 논문을 말씀드리면 8편의 논문에서 네 쌍이 이중게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문제 제기되었던 논문은 국문으로 처음 발간을 하고 그것을 영문으로 옮겨 발간한 케이스로 생각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약 10여 년 전에는 일부 관행처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1~5로 정리된 것을 보면 논문의 게재일시가 2006년까지 상당히 최근의 일이며, 단순히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다시 재 발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두 논문이 3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연구비를 사사하고 있으므로 연구비 이중수혜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 드린 두 쌍의 자료에 해당하는 네 개의 논문에서 주요 데이터가 서로 중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중복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네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 먼저 영어논문이 나가고 그 후에 한국 논문이 나가서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을 중복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자료 중에 논문 7~8과 논문 9~10이 그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논문7은 학교 내 연구소 연구지에 낸 것이고 논문8은 국내에 낸 것인데 내용이 같은 둘을 다 부교수 승진, 정교수 승진 업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가지고 두 번 승진업적으로 활용한 것 등 종합해서 판단하면 이것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연구 진실성 위반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이중수혜와 승진시 반복사용의 이중혜택은 선의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 고려대 이필상 총장은 취임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던

< 간서명 란 >

의 장

115

5편 이상의 논문 표절 때문에 취임 56일만에 총장직을 물려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히 시간을 갖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재호 위원께서 요약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 교수도 연구처에 진실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회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당국에 조사해달라고 공식요청을 했습니다. 크게보면 연구진실성의 문제이겠지만 세 가지 사항으로 분리되는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대학원 위원회를 소집해서 표절의 정도를 심사하고 학위취소 등을 결정해야 하니까 대학원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이중게재된 논문7~8, 논문9~10들이 이수훈 교수의 승진실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승진 결과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감독관청이 총장 취임 취소 등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교무처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이중게재는 없는지 조사해 주어야합니다. 두 논문이 100% 똑같다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태 처장님께서 나와 주셨는데 일반적인 연구진실성의 문제, 이중게재가 어느 정도 심각했던가 하는 포괄적인 문제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확한 조사를 해주십사 부탁했습니다. 이 문제가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의 문제이므로 더 엄중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이정태 처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의원들 생각에 처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평의원 김관균 : 네, 먼저 하시고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이정태 처장님께서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말씀주시면 이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 오라고 하셔서 출석은 했습니다만 사실 본부에서는 제가 여기 출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평의원회가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평의원회가 안건을 다룰 때 관련 담당부처의 처장이 평의원회에 가서 보고해야 할 형식절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대학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 구성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대학평의원회가 중요기관이기에 제가 출석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 간서명 칸 >

의장 

하여 출석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한 보고 자료를 따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은 제게 질문을 해주시면 행정법무처리상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대학평의원회 제1항에 보면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총장의 역할은 대학발전의 핵심입니다. 대학발전에 관한 가장 핵심적 상황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정자가 선임되기 까지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학내 의견이 있으므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되고 이 문제는 대학 발전의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정태 연구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교무처장은 참석을 거부하였고 대학원장님은 일정상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교무처장과 대학원장은 추후에 참석하여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해주십시오.

평의원 김관균 : 제가 평의원회 1년하고 연임되어서 하고 있는데 평의원회에서는 대학발전에 관한 모든 것을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대학실무를 보시는 처장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셨고 평의원이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정태 연구처장님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학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설명하시고 보고 드리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연구처장님은 그 동안 대학 본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온 중간보고를 설명 해주십시오.

연구처장 이정태 : 교수회 자료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최초 제기된 것은 2월 2일입니다. ○○○ 교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실 때 저와 총장님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기하셨을 때 학교에서는 총장님이나 저나 학교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정식 제소를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제소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고, 2월 5일에 ○○○ 교수님이 연구처에 정식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에는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보가 이루어지면 한 달 이내에 예비조사를 해야 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총장님으로부터 본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본조사는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구처는 이번 건도 같은 절차를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은 뒤에 예비조사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2월 5일에 제보를 정식으로 접수하였

< 간서명란 >

의장 *WY*

는데 실질적으로 예비조사를 어느 정도 종료하는 것은 2월 16일입니다. 예비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다 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총장님의 허락을 통해서 이수훈 교수님께 통보를 해드리고 2월 23일 오늘까지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비조사에 대해서 소명을 꼭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사안 자체가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도 있고 시간을 좀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본인이 수긍, 인정을 하면 굳이 본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소명을 요청했고 오늘 소명 결과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나름대로 교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발표하시기 때문에 본부차원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빨리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조사를 빨리 실시하는 게 좋겠다, 가능하면 본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현재 총장님과 처장들의 임기가 금주 말까지 되어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시급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난주부터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회하고도 논의를 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는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만 되면 구성되는 그날로 총장님 결재를 얻어서 발령을 내고 본조사에 착수하려고 지난 주말부터 계속 노력하는데 불행하게도 위원회 구성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조사위원회는 규정상 본교 교수님이 5분 이상 외부전문가 2분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7명 중에는 이 사안에 대해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이 4분 이상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런 구성요건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위원 섭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데 이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에 누가 들어 가느냐도 중요하고 위원회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해주실만한 교수님들을 섭외하는데 시간이 많은 소모가 되었고 위원장을 선임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본부에서도 위원 구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심정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은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구성의 윤곽이 거의 잡혀가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본조사위원회 발령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령이 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조사위원회 소집을 해서 조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조사결과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조사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구성되어 조사가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까

< 간서명란 >

의장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질의하십시오.

평의원 조중열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가 상설기구 아닙니까?

연구처장 이정태 :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총장이 되기 때문에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이 터지기 전부터 대학에서 검증이 되고 미리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그렇고 학생들 교육하는 부분도 그렇고 인사측면에서 아무것도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총장님의 된 이 시점에 와서야 문제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갑니다. 총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 모든 인사위원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실수를 범했던 분들이 중복이 되는지 배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위원 구성할 때 최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을 구성하느라 시간이 걸렸고요.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하는 즉시 제보자에게 위원회 구성을 알려드리고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과거에 논문을 심사하실 때 혼자만 심사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심사했던 분들이 거기에 포함는지요?

연구처장 이정태 :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사학위에 대한 논문은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

평의원 임원형 :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교수가 중복이 되시는지요?

연구처장 이정태 : 그 박사학위 논문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교수님이 이쪽에 연구검증위원회 교수님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교수님이 승진할 때 심사하셨던 교수님도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단 소리인가요?

연구처장 이정태 : 승진하는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평의원 임원형 :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심리학과 교수님이라면 승진할 때 심리학과 안에서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간서명 란 >

의장 

연구처장 이정태 : 연구윤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인데요, 교수 승진하고 하는데 있어서 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윤리까지 같이 평가하는 프로세스는 사실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했느냐를 보고 승진을 결정했지 실적에 제출된 논문들이 연구윤리를 지켰느냐 까지는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승진 시 관여했던 분들과 학위논문 때 관여했던 분들이 이번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꾸려질 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구처장 이정태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라는 데는 fact를 밝히는 곳이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가져다 놓고 비교를 해서 사실이 어떻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분이 하는게 아니고 외부전문가와 내부의 여러 전문가가 들어와서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bias가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위논문에 관해서는 심사위원으로 양쪽 논문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한 번씩 학위논문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한번 심사하시는 경우에는 그 논문이 이전 다른 학위논문과 중복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 심사하시는 분이라면 아파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분을 배제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회의진행상 말씀드립니다.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간사님은 대학원장님께 연락해서 참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위논문 부분은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 해당이 안되는 게 맞겠습니까?

연구처장 이정태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는 규정상 제소자가 있고 피제소자가 있습니다. 제소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피제소자는 본교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본교 교수이어야겠죠.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로 제소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형식 논리적으로 제소가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되었고, 그게 아니고 내용상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 다룰게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형식논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연구처장 이정태 : 형식적으로 봤을 때 박사학위논문은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 대학원 위원회에서 따로 다루기로 그렇게 하고 대학원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박사학위 논문과 그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학술논문이 있고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사이에 저자의 불일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조사를 할 때 정확한 조사를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본인 차원에서 보겠죠.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릴 때 대상으로 하는 논문 아이템들이 결정이 되어있거든요. 그 카테고리 안에는 그게 들어가게 되겠죠.

평의원 이재호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본조사 들어가는 위원을 구성하시는 것까지는 전 총장이 하시는데 그 이후에 주요단계에 있어서 총장님의 승인을 받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당사자가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 차기총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구처장 이정태 :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학교에 그런 케이스가 벌어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어디든 그런 건 만들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결국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통상적인 관례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장이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장이 가지고 있는 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때 전결권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이며 과연 그 위임 자체가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위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현재로써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보충말씀 드리면 박사학위 학생이 실험을 가짜로 하고 논문을 가짜로 쓰고 학위논문을 제출했다 하는 경우 처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다른 것은 연구진 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 받고 또 다른 것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 진실성위원회를 만든 포괄적인 근거는 연구행정에 대하여 포괄

적인 조사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박사학위 과정의 문제가 발생해도 진실성위원회에서 하는 게 원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정확하게 규정에 정해져있는 형식논리를 정확히 따진다면 박사학위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수훈 교수가 업적으로 제시한 논문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장은 참석을 구두로 요청 받았다 하는데 추후에는 반드시 서류상으로 참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주동표 :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연구처에서 진행하신 예비조사 결과를 얘기해줄 수 있는지와 이수훈 차기총장 내정자의 답변이 오늘까지 소명해오는 기한이라 했는데 혹시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연구처장 이정태 :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공식적 오픈을 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정에 보게 되면 피제소자에 대한 권리 및 보호조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어제 갑자기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검토를 미리 못해 봤습니다. 일반이 아닌 평의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평의원 이재호 : 참고로 평의원회 출석요청이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미리 못해 봐서 확신이 없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별 하자가 없는 선에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죄송합니다만 레코드를 위해서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의 규칙 6조 2항을 읽겠습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합니다. 하나는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세 번째로는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일종의 공소시효 비슷한 게 있는데요, 세 가지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떤 뜻인지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평의원 김관균 : 총장님 임기가 이번 주말까지라 본조사를 빨리해서 학교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내용과 맞지가 않는 거네요?

연구처장 이정태 :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재호 교수님이 읽어주신 대로 규정에 의해 입각해서 본조사에 대한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본조사 실시여부 판단이 될 때까지 본조사를 할 전지 말 전지에 대한 것은 계속 미룰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서둘러서 본조사를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문제의 중대성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규정상에 있는 그런 부분을 묵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처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본 조사로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거죠.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본 조사를 서두르고 있는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신 내용이 소명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본조사를 들어가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비조사는 연구처에서 하는 겁니다. 연구처에서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교수를 섭외해서 상당히 짜른 시간 내에 서둘러서 하는 것이고, 예비조사 자체가 본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연구윤리 fact 자체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비조사만으로 이 사안의 결론을 내기에는 다소 좀 위험하다라는게 이것이 연구처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고, 이 결과에 대해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틀에 입각한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정한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연구처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주동표 평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는 소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본조사는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이 올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소명이 안 오면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소명은 피제소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권리를 본인이 포기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소명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진실성을 위반한 걸로 결론이 나도 참 곤란하고 위반 안한 걸로 결론이 나도 곤란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최대한 빨리 끝이 나야지만 학교가

< 간서명란 >

의장 \ 

타격을 덜 입습니다. 새 총장이 3월 2일자로 부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일이라면 한 달 혹은 석 달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새 총장 취임 이전에 결론을 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본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조사결과가 효력을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소모가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본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과거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을 봤을 때 그래봐야 취임 이전이면 남은 시간이 금주 금요일까지 인데 금주 금요일 이전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비관적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규정위반이다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징계나 그런 건 다른 거죠? 이전에 예가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연구처장 이정태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자체의 성격은 총장님에 대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성위원회가 낸 보고서나 결과는 아무런 법적이나 규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 연구진실성에 대한 fact를 최대한 검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한 총장에 대해서 사후조치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소된 논문의 연구위반 사례를 밝힌 fact를 기재하고, 이러이러한 윤리 위반 사례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하는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조치에 대한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연구처장은 가능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원분들은 그게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보통은 굉장히 rough하게 엄중한 윤리 위반을 한 것 같으니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넘어가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그 다음의 조치는 총장의 권한입니다.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평의원 김관균 : 예비조사를 거쳐서 본조사를 실시함에도 총장의 취임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평의원 오동석 :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되는 사항도 아닌 거죠?

< 간서명 란 >

의 장 \

연구처장 이정태 : 이 사안의 경우에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임총장이 얼마나 공정하게 대처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평의원 조중열 : 본조사로 들어간다는 결정은 총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연구처장 이정태 : 본조사를 하라는 결정도 총장님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총장님이 본조사 시작을 지시한거죠. 연구처에서 예비조사 결과와 연구처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님께 결재를 올립니다. 총장님께서 결재하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본조사가 시작됩니다.

평의원 오동석 : 총장이나 총장내정자나 이런 지위 있는 사람의 연구진실성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죠?

연구처장 이정태 : 그렇죠. 학교 시스템만 가지고서는 허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본부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 조사위원회의 법적인 당위성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 어떤 authority가 부여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제기가 되어서...

평의원 김관균 : 이 자리에서 총장님의 논문진실성에 대해 논의하는 거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미리미리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조사 나온 결과 가지고 또 다른 의견을 내고 또 다시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규정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학교 내 여론에 의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본조사 내용의 공표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데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요?

연구처장 이정태 : 그것도 결국은 총장님이 결정합니다. 본조사 내용에 대한 공표 부분도 총장이 결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총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공표할 수밖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본조사위원회가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공표문제를... 모든 게 거기에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의장 박영무 : 그래서 제가 서문호 총장께 수차례 절차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를 했는데 서문호 총장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박영무

연구처장 이정태 : 특별조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일부 처장들이나 총장님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고, 이런 케이스에 대한 학교 자체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했는데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boundary 내에서 처리를 해가면서 결국 최대한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현 본부에 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면 굳이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일부 누구의 책임으로 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마무리가 되면 위원회 명단을 공개를 할 겁니까?

연구처장 이정태 : 제소자에게 공개를 하지만 일반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소자가 ○○○ 교수죠?

연구처장 이정태 : 네, ○○○ 교수님입니다. ○○○ 교수님에게는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소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연구처장 이정태 : 네, 추가되었습니다. 교수회에서도 총장님께 보고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셨으니까 뭐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가능하겠네요.

평의원 이재호 : 원론적으로는 신임총장에게는 제척 사유가 되니까 결국 다른 분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다른 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총장이시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이관할 가능성 혹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가 하는 사람들에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학평의원회에 현 총장님께서 이 부분을 의뢰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볼 때 우리대학 내부 외부 관계되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 그나마 공정성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보고서의 공개여부라든지... 물론 교수회가 제소한 당사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최종보고서가 교수회에 전달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교수회가 보고하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어 평의원회가 공개하든가 적절하게 거기에 따른 권고를 하든 이런 방안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저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decision을 현 본부가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

< 간서명란 >

의장 \ 

기합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느냐면 현총장 임기는 2월 28일로 끝나는데 현 총장이 본조사위원회 빌령을 내는 것 자체가 차기총장의 권한을 현총장이 침해하는 문제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일부 법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 생각은 차기 집행부와 교수회가 잘 논의를 하시면 그런 정도의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하여간 최소한 교수회가 제보자의 당사자인건 확실하죠?

연구처장 이정태 : 그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사실 교수회는 추가로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보자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저도 안전이 추가된 것을 보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만 연구처장님께서는 규정에 입각해서 오히려 규정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해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박영무 : 예비조사 보고서는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예비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예비조사를 요약한 내용을 두 페이지로 정리해서 연구처장 이름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평의원회는 교무위원회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평의원회에서 얘기 못 할만한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순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되었다면 이 정도는 벌써 걸러져서 차기 내정자가 될 수도 없죠.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갈거냐 하는 건데,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학내 중요한 문제들은 결국엔 언젠간 평의원회에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곳이 평의원회입니다. 일부 교무위원은 총장의 staff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이고 평의원회가 결국 재단과 총장 그리고 학교의 관계에 연결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개되지 않을 내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예비조사 나온 결과가 평의원회에서는 공개되어야합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평의원회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한 행위가 그걸 근거로 상대방이 학

교를 상대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를 해서 학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못하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고 평의원회에 이걸 공개하는게 나중에 학교가 법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연해지면 언제든지 제가 다 오픈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구두로 요청을 해주시지 말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서면... 만약에 못하게 되면 왜 어 ör어 ör한 이유 때문에 못하는지 하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하게 되는 것을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어제 의장님의 지시하셨는지 기획처에서 얘기했는지 이수훈 교수의 업적자료를 가지고와서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제가 구두부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의장 박영무 : 대학원장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전화로 그냥 부탁했나요? 내가 얘기할 때는 공문으로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근태 : 어제 오후에 안전을 주셨는데, 참석여부 확인 및 자료준비 요청을 하려면 축박한 시간으로 인하여 전화연락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대학원장님이 참석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하였습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공식으로 요청을 해주시고 반드시 거기에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법적 문제를 판단하여 적절히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청하시는 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

평의원 이재호 : 혹시 예비조사 결과가 총장님 승인 받은 날이 언제인가요?

연구처장 이정태 : 아직 정식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승인을 안 받은 본조사 위원회를... 하여간 발령 내기 직전에라도 승인하셔야 하죠.

연구처장 이정태 : 그렇죠. 분명 그래야 합니다. 총장님과 구두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중에 승인해주시기로 약속을 받고 미리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위원회 선임이 끝나면 예비조사 승인받는 것과 위원회 발령 내는 것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영무 : 행정에 관해 간사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연구처에는 예비조사 보고

< 간서명 란 >

의장 \ 

서, 이수훈 교수 연구실적 리스트 첨부를 교무처에는 제가 아까 이미 얘기한 이수훈 교수 승진관련 실적물, 평가인사기록, 정보공개 요청 공문을 총장 앞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두로 요청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학원장이 아마 올 것 같은데 그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정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처장 이정태 :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박영무 : 30분 내에 안 오면 폐회하고 차기 회의로 넘기겠습니다.

(30분간 정회)

의장 박영무 : 마지막 코멘트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저희도 공문으로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에게도 시간적인 텀을 주셔서 자료를 요청한다면 공문이 전달되었을 때 일정을 조절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평의원들께 안전을 미리 알려줘야 하고 안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학교 측에서 가져오는 암이 있고 평의원들이 가져오는 암이 있는데 이걸 다 수렴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것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2월 23일

의장 박영무

부의장 주동표

평의원 조중열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오동석

평의원 박철균

평의원 임재수

평의원 김용호

(서명)

평의원 임원형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박상호

기록 진성호

< 간서명란 >

의장

- 28 -